| | | | |
|---|---|---|---|
| | 겸임교원임용규정 | 규정번호 | 3-2-07 |
| | | 제정일자 | 2007. 1. 1. |
| | | 개정일자 | 2025.11. 1.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민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겸임교원의 임용, 복무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겸임교원은 산학연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학생의 교육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

제3조(자격) 겸임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순수 학술 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담당해야 한다. (개정 2024.11.1., 2025.11.1.)

1.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 내용이 원소속기관에서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
3.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근무경력(원소속기관에 소속되기 전에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자
4. 소속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자
5.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서 정한 정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임용되는 겸임교원의 경우 만 65세 이상인 자를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최대 1년)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4조(임용절차) 겸임교원의 임용은 소속 학과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제5조(임용기간) ① 겸임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임용할 수 있다.

② 겸임교원을 재임용할 경우 학과장은 겸임교원 평가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

③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되지 아니한 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한다.

④ 임용기간 중 근무처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동 후 1개월 이내에 변동된 소속기관장의 동의서와 재직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구비서류) ① 겸임교원의 임용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겸임교원 임용 지원서
2. 학력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및 성적증명서
3. 재직증명서
4. 경력증명서
5. 겸임교원 재임용 신청서
6. 소속기관장의 겸임교원 임용동의서
7. 주민등록등본
8.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또는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9.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0.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겸임교원을 재임용할 때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 중 제1호 및 제2호, 제7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3조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 및 현직 재직 여부는 공적 증명서(4대 보험)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교직원(유치원을 제외한다), 군인은 예외로 한다.

제7조(복무) ① 겸임교원은 주 9시간 이하의 강의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겸임교원 업무와 관련하여 겸임교원은 본 대학 총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③ 겸임교원은 재직 중 발표되는 모든 논문이나 학술활동 등에 본 대학 겸임교원임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처우) 겸임교원의 강사료는 본 대학 강사료지급규정에 따른다.

제9조(면직) 겸임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직할 수 있으며,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기중이라도 면직할 수 있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시기를 당해 학기말로 한다.

1. 본직 기관의 직을 상실하였을 때. 다만, 임용기간 만료 전 타 직장으로 전직하였을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동의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자격조건이 유지될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본 대학의 명예 또는 겸임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을 때
4. 계약기간 중 담당교과목을 배정받지 못하였을 때
5.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담당교과목이 폐지되었을 때
6. 기타 총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당연퇴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 퇴직한다.

1.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되지 아니한 자
2. 사립학교법 제57조에 해당되는 자
3. 해당학기에 만65세가 되는 날이 있는 자(해당학기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겸임교원규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겸임교원 자격 심사표

<table>
<tr><td colspan="2">학과</td><td></td><td>성명</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8">임용자격<br>[고등교육법<br>제7조]</td><td>학사학위<br>취득대학</td><td colspan="3"></td><td></td></tr>
<tr><td rowspan="7">자격<br>적합<br>여부</td><td colspan="3">내용</td><td>확인</td></tr>
<tr><td colspan="3">■ 조교수 자격기준 충족 확인<br>(관련법령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td><td rowspan="2">□<br>적격<br><br>□<br>부적격</td></tr>
<tr><td colspan="3">1) 최종학력 : 박사 / 학교졸업<br>(박사수료는 석사로 작성)</td></tr>
<tr><td colspan="3">2) 최종학력이 박사가 아닌 경우 자격기준 충족 근거 작성</td></tr>
<tr><td colspan="3">■ 현재 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담당과목의 유사성 확인<br>1) 현재 담당 직무</td><td>□<br>적격<br><br>□<br>부적격</td></tr>
<tr><td colspan="3">■ 상근직(기간제근로자 재직)으로 유사 경력 3년 이상 보유 확인
<table>
<tr><td>산업체명</td><td>상근직 여부</td><td>재직기간</td><td>비고</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합계</td><td>년 개월</td><td></td></tr>
</table></td><td>□<br>적격<br><br>□<br>부적격</td></tr>
<tr><td colspan="3">■ 상근직 재직 여부 확인(4대보험 가입)</td><td></td></tr>
<tr><td colspan="3">
<table>
<tr><td>구분</td><td>사업장명</td><td>가입여부</td></tr>
<tr><td>국민연금</td><td></td><td></td></tr>
<tr><td>건강보험</td><td></td><td></td></tr>
<tr><td>산재보험</td><td></td><td></td></tr>
<tr><td>고용보험</td><td></td><td></td></tr>
</table></td><td>□<br>적격<br><br>□<br>부적격</td></tr>
<tr><td>임용제한<br>해당여부</td><td colspan="5">예) 유, 무</td></tr>
<tr><td rowspan="3">담당과목과<br>산업체<br>직무와의<br>연관성</td><td rowspan="2">담당과목</td><td>1학기</td><td colspan="3"></td></tr>
<tr><td>2학기</td><td colspan="3"></td></tr>
<tr><td>연관성<br>근거</td><td colspan="4">겸임교원 임용추천서에 상세히 기술</td></tr>
</table>

위와 같이 자격 적합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겸임교원 채용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심사하였고, 본직기관의 직무가 담당할 교과목과의 연관성이 있어 본 학과 겸임교원으로 임용하여 수업을 배정함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학과장 :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 겸임교원 재임용 학과 평가표

| | | | | | |
|---|---|---|---|---|---|
| 학과명 | | | 근무기관(산업체명) | | |
| 직 급 | | | 현재 임기 | | |
| 교수명 | | | 재임용 평가기준 충족 여부 | | |
|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 배점 | 평가점수 |
| 학생교육 및 진로지도 | 실무/직무관련 지도 | 매우 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 | 10점 | |
| | 진로/취업관련 지도 | 매우 우수(20), 우수(16), 보통(12), 미흡(8), 매우 미흡(4) | | 20점 | |
| 학생교육 | 수업운영의 충실성 (휴강 및 보강 포함) | * 휴·보강 이행 미준수 : 1회당 -3점 | | 10점 | |
| | 강의 및 수업 관련 이행 준수 | * 강의계획서, 성적입력 및 정정 기간 미준수 : 1회당 -2점 | | 10점 | |
| | | * 무단결강, 무단휴강, 수업시간 임의변경, 수업시간 미준수(사전 승인 제외) : 1회당 -5점 | | 20점 | |
| 강의평가 | 강의평가 | 4.30 이상 | 30점 | 30점 | |
| | | 4.10 이상 ~ 4.30 미만 | 25점 | | |
| | | 3.90 이상 ~ 4.10 미만 | 20점 | | |
| | | 3.70 이상 ~ 3.90 미만 | 15점 | | |
| | | 3.50 이상 ~ 3.70 미만 | 10점 | | |
| | | 3.50 미만 | 0점 | | |
| 총점 | | | | 100점 | |
| 종합의견 | [평가 적합 판정 기준] 전체 점수 70점 이상이어야 함. | | | | |

**위와 같이 우리 학과 임기만료 예정 겸임교원의 재임용 여부에 대한 평가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학과장 : (서명)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 교원인사위원회 겸임교원 재임용 평가표

| 피평정자 | | | 평정 | | | | |
|---|---|---|---|---|---|---|---|
| 소속 | 직번 | 성명 | 최종 평가 점수 | 평가 | | 임용 동의/비동의 | 의견 |
| | | | | 적합 | 부적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겸임교원의 재임용 여부에 대한 평가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경민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 겸임교원 임용계약서

경민대학교 총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겸임교원(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본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계약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 | | | | |
|---|---|---|---|---|
| “갑” | 경민대학교 총장 ○○○<br>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545 | | | |
| “을” | 소속 | | 성명 | |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 주소 | | | |

**제2조(계약 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____년 ____월 ____일 ~ ____년 ____월 ____일 까지(12개월)로 하며, 종기 도래 시까지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없으면 그 종기 도래로써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을”은 재임용되지 않는 경우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달이 속하는 학기말에 당연 퇴직한다.

**제3조(보수)** ① 강사료는 시간 당 기본 9시간까지는 _____원, 9시간 초과하는 경우 _____원으로 한다.

② 임금은 개강일로부터 기산하여 매 4주간(한 학기에 총15회)을 임금 계산 기간으로 하여 매월 27일에 지급한다. 다만,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③ 임금은 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현금 지급할 수 있다.

**제3조(근로시간 및 강의)** ① 강의 교과목 및 강의 배정 시간은 다음과 같다.

| 학기 구분 | 강의 교과목 | 강의 배정 시간(주당) | 비 고 |
|---|---|---|---|
| 1학기 | | | |
| | | | |
| | | | |
| 2학기 | | | |
| | | | |
| | | | |

② 전항의 ‘강의 배정 시간’ 외에 강의준비시간, 시험출제시간, 시험채점시간, 성적입력시간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무시간 산출이 어려운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③ 구체적인 출강일과 시간표는 “갑”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한 후 “을”에게 통보한다.

**제4조(휴강 및 보강)** “을”은 정해진 강의일이 개교기념일, 공휴일 등과 중복되어 휴강하는 경우 또는 본인의 사정으로 휴강하는 경우 “갑”에게 휴강일 1주일 전에 보강계획서를 제출한 후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강의 장소)** 강의 장소는 경민대학교 내 지정된 강의실로 하되, 특별한 경우 현장실습(실기)을 경민대학교 외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하는 경우 "갑"은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하고 그와 관련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을"이 "갑"에게 제출한 계약 관련 서류 중 허위 사실이나 위조 서류가 있는 경우
2. "을"의 사정으로 인해 2주 이상 강의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을"의 강의로 인하여 외부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물의가 빚어진 경우
4. "을"이 경민대학교의 건학이념에 위배되는 언행을 한 경우
5. "을"의 강의평가 결과가 본 대학 강의평가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하위평점인 경우

**제8조(기타 근로조건)** ①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경민대학교 규정에 따른다.
②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 경민대학교 총장 ○○○(인)

**"을"** : 겸임교원 _____(인)